

2025년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질 개선 및 지구온난화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4. 7.

고령군



○ 사업비 : 43백만원(국비 28, 도비 8, 군비 7)

○ 사업물량 : 총27대

- 1차(70%) : 18대(우선순위 2, 배달 사용 목적 4, 일반 12)

- 2차(30%) : 9대(우선순위 1, 배달 사용 목적 2, 일반 6)

※ 1차 공고 물량 중 미집행 물량의 경우 2차 공고(7월 예정)부터는 일반물량과 통합 집행

1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이륜차를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등록하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

(개인)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6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고령군에 주소를 둔 만 16세
(원동기 면허·2종 소형면허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산정

(법인)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6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고령군에 사업장 주소를 둔 법인

(공공기관) 고령군에 위치한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우선지원

- 취약계층(차상위계층,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다자녀 가구(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전기이륜차 대체 구매
- 소상공인

○ 지원제외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에서 구매하는 경우

○ 지원조건

- 신청 보급대수 1인당 1대로 제한(법인 1개소당 1대)
- 전기이륜차 지원대상자 승인 후 2개월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완료
※ 2개월 이내 차량 미출고 시,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내 최초 등록 주소지 '고령군'으로 제한

2	지원내용 및 금액
----------	------------------

○ 대상차종

- ①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 ②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이륜차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 지원 금액 : 차종별 차등 지원 ※ 차종별 지원금액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

구분	유형	일반형				기타형
	규모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최대지원액(만원) (국비+지방비)		140	230	270	300	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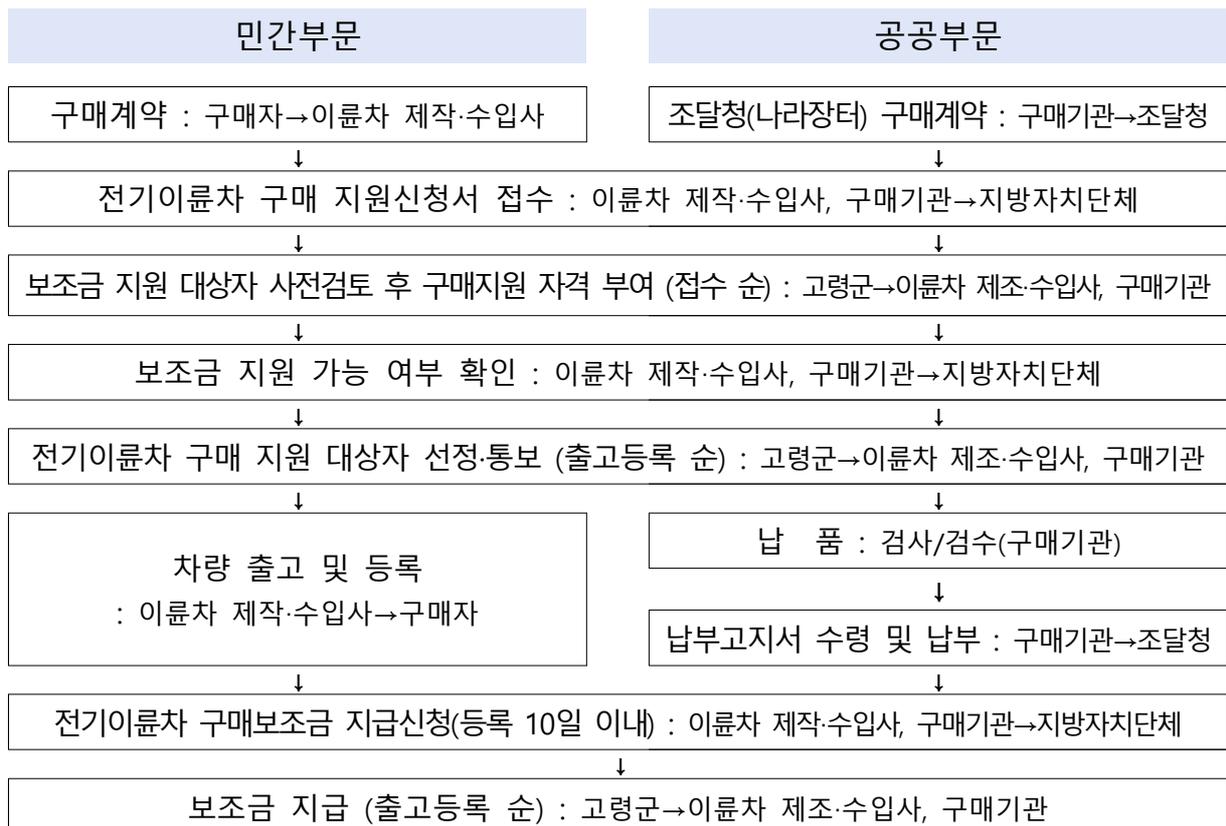
< 추가 지원 >

1. 소상공인 구매 :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2. 취약계층(차상위계층, 장애인) 구매 :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3. 농업인 구매 :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4. 배달 사용 목적 구매 :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5.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폐차 후 구매 : 국비 30만원 추가 지원

※ 추가지원 관련 확인 서류 제출 必

※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 구매 시 배달 추가 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

3 사업절차



4

사업신청

○ 신청기간

- 1차 : 2025. 4. 9.(수) ~ 2025. 6. 30.(월)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2차 : 2025. 7. 1.(화) ~ 2025. 12. 12.(금)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2025. 12. 12.까지 차량 등록 후 지급신청까지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구매 지원신청서는 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가능(방문 접수, 우편 접수 불가)

(민간부문)

- ① 신청인이 구매를 희망하는 전국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구매 계약을 체결 후 구매 지원신청서를 영업점에 제출
- ② 영업점은 접수된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첨부서류를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 (www.ev.or.kr)으로 제출·접수

(공공부문)

- ① 공공기관은 조달청(나라장터)을 통한 구매계약 체결
- ② 공공기관은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첨부서류를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 (www.ev.or.kr)으로 제출·접수
※ 공공기관은 자체 예산으로 전기이륜차 구매대금 납부 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 요청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 민간부문

(공통) ①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서식 1] 및 보조금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서식 1-1]

②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반드시 기재)

(개인) 주민등록초본(최근 1년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포함)

(개인사업자) ① 주민등록초본(최근 1년 주소 변동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포함)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기업)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② 활약서[서식1-2]

< 추가 서류(해당되는 경우)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상이유공자 : 국가보훈등록증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농업인 : 농업인 확인서
 - 소상공인 : 소상공인증명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전기이륜차 대체 구매 : 사용폐지 증명서, 폐차확인증서식1-3이 각 1부.
 - 배달 사용 목적 :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1부,
시간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3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1부
- ※ 신규로 배달 목적으로 전기이륜차 구매하는 경우 유상운송보험(시간제 포함)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확인 증서 제출 후 추후 6개월 또는 3개월 보험 유지 사실 증명 시 추가 지원금 추후 지급

- 공공부문

- ①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서식 1] 및 보조금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서식 1-1]
- ② 조달청 계약서
- ③ 사업자등록증

- ※ 이 외에도 서류검토 과정에서 고령군이 추가자료 요청 가능하며, 자료 제출 거부 시 일정 기간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제한될 수 있음
- ※ 신청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2차례(1차: 7일, 2차: 5일)의 보완 기회를 제공하며,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2차 보완 이후에도 적정 서류가 완비되지 아니한 경우 대기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5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차량 출고·등록순

○ 선정절차

- ① 접수순으로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 없을 시 구매 신청 자격 부여하며 전기이륜차 제조·수입 영업점으로 통보

※ 자격부여는 자격만 부여된 상태로 보조금 지급 확정 대상자 의미 아님

※ 구매 신청 후 2개월 이내 출고, 등록 가능 차량만 보조금 지원 가능하며, 2개월 이내 차량

미출고 시 선정 취소 또는 후순위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② 전기이륜차 제조·수입 영업점은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 확인 요청 접수

※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확인치 않고 출고된 차량의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③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 가능 확인 요청 순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10일 이내 미출고시 선정 취소

※ 예산 범위 내 잔여물량에 대해 다수의 차량이 동시에 10일 이내 출고 확정 통보 시,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및 당초 구매 신청 자격부여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6	보조금 지급
----------	---------------

○ 신청 서류

- ①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서식 2] 및 청렴이행서약서[서식 2-1]
- ②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증
- ③ 최소자부담 확인 서류(현금영수증, 카드결제영수증 등)
- ④ 세금계산서
- ⑤ 사업자등록증(이륜차 제작·수입사) ※ 공공기관 생략 가능
- ⑥ 입금계좌 통장사본(이륜차 제작·수입사) ※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통장사본

○ 지급 절차

- ① 구매자는 차량대금(차량가격에서 보조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을 영업점에 납부 후 차량 인수
- ② 전기이륜차 제조·수입 영업점은 차량등록 후 10일 이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
- ③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 없을 시 영업점에 보조금 지급하며, 영업점은 보조금 입금 확인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에서 '최종 완료' 처리

※ 신규 배달 목적 구매 추가 지원금은 6개월 또는 3개월 후 자격 확인하여 전기이륜차

7 유의사항 및 의무사항

○ 유의사항

1.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차종이나 연식을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취소함.
※ 단순 변심이나 출고 지연 사유로는 사전 승인 불가
2. 렌트·리스 업체가 구매하는 경우 해당 업체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 주거지 중 선택하여 보조금 지원신청 가능
3. 전기자동차 등록 시 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 공동명으로 신청할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 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4. 지방세 등(세외수입,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5.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이전에 차량을 출고·신고한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6. 구매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국비+지방비+이자)을 환수함
7.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등)이 이륜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확인 바람

○ 의무사항

1. 구매보조금을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라 의무운행기간(수출말소 8년, 그 밖의 경우 2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폐차, 수출) 시에는 고령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매도 시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의무운행기간 관련 승계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①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②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8	기타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 지역경제실(☎054-950-6588), 환경부 전기차 통합 콜센터(☎1661-097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내용에 표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2025년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고령군 지역경제과의 의견에 따릅니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이륜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이륜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를 재판매 또는 임대하고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는데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고령군수 귀하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이륜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고령군수 귀하

확약서

본 신청자는 고령군에서 시행하는 「2025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공고」에 신청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확약합니다.

1. 본인은 고령군에서 시행하는 「2025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공고」에 명시된 유의사항, 의무준수사항 등을 확인했으며,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고령군에서 구매 보조금 받은 차량을 신청 시 제출한 사업상 목적 외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상 위배되는 사항이 생길 시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3. 본인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상 불법 신청(위장전입, 명의도용 등) 사전 차단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위배되는 사항 발생 시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4. 이에 고령군 보조금 사업에 신청함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 _____ (인)

고령군수 귀하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확인증

폐차 업체명	상호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폐차 차량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이륜차 번호		차대번호			
	차명		연식			
	배기량		폐차일자			
	폐차장 반입 사진			차량번호, 차대번호 등		
	전면사진			후면사진		

상기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확인자 : “폐차장 상호” (사업장 날인)

[서식 2]

2025년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제작사)	제작사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구매자	성명 (법인명)		접수번호	
	생년월일 (법인번호)		연락처	
전기이륜차 구매내역	차량명	차량번호	수량	출고일자
사업비	계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자명	
	계좌번호			
	지급요청액			
<p>고령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게 전기이륜차를 판매하였으며, 해당 출고차량에 대하여 고령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5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제조·판매사”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left; margin-top: 20px;">고령군수 귀하</p>				
<p>※ 첨부서류 전기이륜차 신고필증 사본 1부, 세금계산서 등 기타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서류</p>				

고령군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고령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고령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령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5년 월 일

서약자 : 성 명 “구매자” (서명)